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월 21일

발 의 자 : 이정인, 홍성룡, 김경영,
김태호, 김소양, 이준형,
노승재, 전병주, 김혜련,
문장길, 김경우, 오현정,
김화숙, 이영실, 봉양순,
이병도, 박순규, 김용연,
김동식, 서윤기 의원
(2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함. (안 제5조제1항)
- 나.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에 대한 구매 시설 규정.
(안 제5조제2항)

다.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관련 법률 조항 변경. 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.
 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
 2.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

제5조제3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법 제7조제3항”을 “법 제7조 제4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